

사 천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745호 2021. 9. 23.(목)

조 례

- 사천시 조례 제1769호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
- 사천시 조례 제1770호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 4
- 사천시 조례 제1771호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사천시 조례 제1772호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 15
- 사천시 조례 제1773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17
- 사천시 조례 제1774호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 19
- 사천시 조례 제1775호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23
- 사천시 조례 제1776호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 36
- 사천시 조례 제1777호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38
- 사천시 조례 제1778호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41
- 사천시 조례 제1779호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3
- 사천시 조례 제1780호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5
- 사천시 조례 제1781호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48

- 사천시 조례 제1782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53
- 사천시 조례 제1783호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 77
- 사천시 조례 제1784호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81
- 사천시 조례 제1785호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89
- 사천시 조례 제1786호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2
- 사천시 조례 제1787호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4
- 사천시 조례 제1788호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 97

규 칙

- 사천시 규칙 제782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 101

훈 령

- 사천시 훈령 제41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 113
- 사천시 훈령 제412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 142

공 고

- 사천시 공고 제1208호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서동1지구, 정곡1지구) 공고·공람 - 148

회 람										
----------------	--	--	--	--	--	--	--	--	--	--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6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사천시가”를 “조례는”으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4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2항) 중 “시장은”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으로, “따른 심의위원회의”를 “해당하는”으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로, “의회에 위원추천”을 “사천시의회에 위원 추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부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법 제21조제1항에”를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제2호”를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로, “시장은 다음”을 “다음”으로, “지도·감독”을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감독”으로 한다.

제10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 영 제20조제2항제2호”를 “영 제20조제2항제2호”로, “경영실적평가”를 “경영실적 평가”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관련분야”를 “관련 분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날로부터 15일 이내”를 “날부터 15일 이내에”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요청 받은 날로”를 “요청받은 날”로 한다.

제14조 전단 중 “재무건전성”을 “재무 건전성”으로,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관계서류”를 “관계 서류”로, “요청 받은”을 “요청받은”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17조와 제32조의2부터 제32조의10의 규정에 따라 시”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사천시”로, “보조사업”을 “지방보조사업”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의 제목 “(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보조금의”를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집행 등 그”로 하고, “법령이나 조례”를 “조례”로, “조례가”를 “조례에서”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시장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지방보조금은 법 제32조의2제2항”을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으로, “운영비”를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2장의 제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

제6조 및 제7조를 각각 제7조 및 제6조로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의 제목 “(위원회 설치)”를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중전의 제3항) 중 “일반직 공무원”을 “일반직공무원”으로, “위원수”를 “위원 수”로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7조(중전의 제6조)제3항(중전의 제4항)제2호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5항) 중 “위촉직인 민간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차례에 한하여”를 “차례만”으로, “전임자의 잔여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6항) 중 “사무 처리를”을 “사무를 처리하기”로, “두되”를 “두며”로, “예산업무 담당”을 “예산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한다.

제6조(중전의 제7조)의 제목 “(위원회 기능)”을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2조의2제3항”을 “법 제26조 제1항”으로, “위원회”를 “설치한 사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법 제26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2.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사천시의회에 제출하는 의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지방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를 삭제한다.

제12조 중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를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로, “위원장이 따로”를 “위원장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2제4항”을 “법 제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받고자 하는”을 “교부받으려는”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14조의 제목 “(보조신청)”을 “(교부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을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으로, “사항을”을 “각 호의 사항 모두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부받고자 하는”을 “교부받으려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 한함”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교부받고자 하는”을 “교부받으려는”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교부결정)”을 “(교부 결정)”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사 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를 “조사하여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경우에 한함”을 “경우에만 해당한다”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교부조건)”을 “(교부 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7조의 제목 “(교부결정 통지)”를 “(교부 결정 통지)”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교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없이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18조의 제목 “(교부방법)”을 “(교부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법 제17조제2항”을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으로 한다.

제23조 중 “기하기 위하여”를 “위하여”로, “때”를 “때에”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성과평가)”를 “(운용평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법 제32조의7”을 “법 제27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를 “시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로, “필요성에 대해 제8조에 따른”을 “필요성을 평가하고”로, “평가”를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32조의9제1항”을 “법 제21조제1항”으로, “지방보조금에 의하여”를 “지방보조금으로”로, “중요 재산에 대하여”를 “중요재산에 대해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승인없”을 “승인 없”으로, “아니된다”를 “아니 된다”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법 제32조의9제3항”을 “법 제21조제3항”으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법 제60조”를 “「지방재정법」 제60조”로, “교부 현황, 성과 평가결과”를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로, “변동 사항”을 “변동사항”으로 한다.

제29조 중 “제26조제2항제1호”를 “제26조제1항제1호”로, “대하여”를 “대해서”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천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사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에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보험 기관과 보험”을 “보험기관과 보험 계약”으로, “보험료의 일정
액을 지원하는 것을”을 “보험료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보험기관”이란 출생아 복지보험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다목 중 “나항”을 “나목”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신청일로부터 10일”을 “신청일부터 10일”로, “신청일로부터 20일”을 “신청일부터 20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보험기관”을 “시장”으로, “공모하여”를 “공모하여 보험기관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낙일로”를 “승낙일”로 한다.

제9조 중 “읍·면·동장은”을 “인구증가시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을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별표 3] <개정 2021. 9. 23.>

우대인증(제3조제6호 관련)

우 대 인 증

성 명:

(가족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유효기간: 년 월 일)



사 천 시

(가로 8.5cm × 세로 5.5cm)

(뒷면)

- 사천시 실내수영장 이용료 할인(일반인 이용료 기준 50퍼센트)
- 삼천포유람선 승선료 할인(50퍼센트)
-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사천시 주최·주관 기획공연 관람료 할인
(정액입장료 또는 관람료의 30퍼센트)
- 항공우주박물관 무료 관람
-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무료 관람
- ※ 우대인증 가족 성명에 기재된 사람만 사용 가능
- ※ 신분증과 함께 제시
- ※ 중복할인 불가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행정동우회를 지원함으로써 퇴직 공무원들의 시정 참여를 통한 지역발전 및 공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 사업
2. 시정모니터링 활동 및 시정홍보 사업
3. 시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실적보고 등) ① 행정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
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시”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사천시”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사천시”로, “964명”을 “972명”으로 하
고, 같은 조 제1호 중 “947명”을 “955명”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별표 3] <개정 2021. 9. 23.>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 계	본 청	의 회 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동	
총 계	972	-							
정무직 계	1	-							
단체장(시장)	1	-							
일반직 계	941	-							
3급	1	1							
4급	7	4	1	2					
5급	51	26	2	6	3	1	7	6	
6급 이하	882	-							
별정직 계	-	-							
6급 상당	-	-							
연구직 계	1	-							
연구사	1	-							
지도직 계	29	-							
지도사	29	-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사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 성착취물을 공유, 배포, 소지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 성착취물”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촬영기기 등을 사용하여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상대방의 의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형태로 촬영·편집·가공된 비동의 성(性)적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복제물을 말한다.

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
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내용이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연계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연계
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
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
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성폭력방지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을 위하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21. 9. 23.>

제증명 등 수수료(제3조 관련)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 증 명 〉			
1. 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확인	1통	300원	
2. 영업, 직업에 관한 증명			
(1) 영업주	1통	500원	
(2) 중소기업자	1통	500원	
(3) 광업, 공업, 상업	1통	500원	
(4) 농가, 비농가	1통	500원	
3.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300원	
(2) 생산실적	1통	300원	
(3) 수출실적	1통	300원	
(4) 납품실적	1통	300원	
(5) 건물사용	1통	300원	
(6) 공장원료 수요	1통	300원	
(7) 분배농지 상환완료	1통	300원	
(8) 실수요자 증명	1통	300원	
(9) 시설보유 증명	1통	300원	
(10) 식품, 환경 영업허가 (휴·폐업) 사실증명	1통	300원	
4.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3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300원	
(나) 토지도면	1통	300원	
(다) 건물도면	1통	3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3) 공부 및 부분열람			
(가) 기본료	1시간당	100원	
(나) 초과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 등록지정 등의 대장 열람	1건	100원	
(5)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	1건	600원	
(6) <삭제>			
5. 도시계획 등에 관한 증명			
(1) 환지(예정지 지정)증명	1필지	400원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1필지	1,000원	
(나) 컬러발급	1필지	1,500원	
6.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지방세세목별 과세증명서	1건	800원	인터넷 신청 시 무료
7.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5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500원	
(3) 원천징수 공제증명	1통	300원	
(4) 공사준공 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 확인원	1통	300원	
(5) 보상금 지불증명	1통	300원	
(6) 면세용도 물품증명	1통	300원	
8.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3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300원	
9. 그 밖의 제증명			
(1) 수산업에 관한 증명			
(가) 어업권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나)	어선원부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신청	1건	800원	
(2)	소방시설 완비증명	1건	500원	
(3)	그 밖에 시설공부 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건	300원	
(4)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필지	800원	
(5)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1주택	800원	
(6)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1건	4,000원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8)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	1건	800원	
〈인가, 허가, 신청, 등록지정, 확인 등〉				
1. 일반행정 관계				
(1)	행정서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	행정서사 영업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삭제>			
	(가) <삭제>			
	(나) <삭제>			
(4)	토지등급설정심사 청구신청	1매	500원	
(5)	전기요금 감액시 주민등록에 의한 확인	1매	100원	
(6)	그 밖에 각종 인·허가신고필증 재교부	1건	500원	
2. 산림 관계				
(1)	입목등록 및 변경등록신청	1건	500원	
(2)	개간허가증 교부	1건	500원	
3. 농축산 관계				
(1)	축사 표준설계 도서발급신청	1매	200원	
(2)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건	500원	
(3)	농지보전관계 다년생식물 재배신청	1건	500원	
(4)	잠건매매 주선업의 허가신청	1건	1,000원	
(5)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원	
(7) 농어촌승마시설 신고	1건	30,000원	
(8) 농어촌승마시설 변경신고	1건	10,000원	
4. 수산업 관계			
(1) 수산제조업의 변경허가신청	1건	500원	
(2) 어획물 양육(전적) 허가신청	1건	1,000원	
(3) 근해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4)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해조류·패류·어류등·복합·협동·외해)면허 신청	1건	5,000원	
(5) 어업면허 또는 양식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 허가 신청	1건	3,000원	
(6) 어업면허, 어업허가 및 신고어업 공동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또는 양식업면허, 양식업허가 공동신청사항(대표자선정·변경·지분변경) 신고	1건	1,000원	
(7) 어업권(지분) 또는 양식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	1건	4,000원	
(8)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분할 인가신청	1건	2,500원	
(9)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변경 인가신청	1건	3,000원	
(10) 면허사항 변경신고 (주소·성명·대표자·선박명칭)	1건	1,000원	
(11) 관리선 사용의 지정·어선 사용승인 및 (양식) 관리선 사용의 지정·승인 신청	1건	1,000원	
(12) 관리선 사용지정(어선사용승인)사항 및 (양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사항 변경신청	1건	1,000원	
(13) 연안어업 허가신청	1건	2,500원	
(14) 구획어업 허가신청	1건	4,500원	
(15) 한시어업허가(허가연장) 신청	1건	2,000원	
(16) 시험어업 또는 시험양식업 신청	1건	2,000원	
(17) 어구·시설물 또는 양식시설물의 철거의무 면제(연장) 신청	1건	3,000원	
(18) 유해어법(有害漁法)의 사용허가 신청	1건	3,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19) 내수면어업 허가(자망어업, 종묘채포어업, 연승어업, 패류채취어업, 낭장망어업, 각망어업)	1건	5,000원	
(20) 내수면어업 면허(정치망어업)	1건	9,000원	
(21) 내수면어업 면허(공동어업)	1건	7,500원	
(22) 내수면어업 신고	1건	1,000원	
(23) 내수면어업 연장허가 신청	1건	5,000원	
(24) 어업허가 유예신청	1건	1,500원	
(25)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1건	1,500원	
(26) 어업허가사항 또는 양식업 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1,500원	
(27) 어업신고	1건	1,500원	
(28)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000원	
(29) 삭제			
(30) 면허(양식면허)신청 기간의 연장신청	1건	1,000원	
(31) 어업면허증·관리선사용지정증(어선사용승인증) 또는 양식업면허증, 양식업허가증, 관리선사용지정(승인)증 재발급	1건	1,000원	
(32) 삭제			
(33)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 포기 신고	1건	1,000원	
(34) 허가·신고어업 또는 양식업 폐업 신고	1건	800원	
(35) 허가어업 휴업(재개) 신고	1건	1,000원	
(36) <삭제>	1건	800원	
(37) 2중 이상 자망 사용승인 신청	1건	4,500원	
(38) 어업권 등의 보상청구	1건	2,000원	
(39) 입어 재결신청	1건	3,000원	
(40) 어장구역 등 재결신청	1건	3,000원	
(41) <삭제>	1건	3,000원	
(42) 수산자원 포획·채취금지 해제허가	1건	3,000원	
(43) 어업권(지분)이전·변경등록	1건	1,500원	
(44) 삭제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5) 삭제			
(46) 어업허가증(신고어업증명서)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47) <삭제>	1건	1,000원	
(48) 낚시어선업 신고	1건	2,500원	
(49) 어획물운반업 등록	1건	5,000원	
(50) 어획물운반업 변경	1건	2,000원	
(51) 양식업(육상해수양식업 및 육상 등 내수양식업) 허가 신청	1건	4,000원	
(52) 삭제			
(53) <삭제>	1건	2,000원	
(54) 어선건조·건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2,000원	
(55) 어선건조·개조발주 허가(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56) 어선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1건	3,000원	
(57) 증서 등의 재발급(어선건조·개조허가서, 허가 사항변경허가서,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등록필증, 선박국적증서영역서)	1건	1,000원	
(58)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	1건	4,000원	
(59) 삭제			
(60) 낚시터업(허가, 등록) 신청	1건	2,500원	
(61) 낚시터업 변경(허가, 등록)신청	1건	1,500원	
(62) 낚시터업 지위승계 신고	1건	1,500원	
(63) 관상어양식업 신고	1건	1,000원	
(64) 내수면양식업 면허신청	1건	9,000원	
5. 상공 및 동력자원 관계			
(1) 공장시설 등록허가 신청	1건	1,000원	
(2) 청과시장 경매사 임면 승인신청	1건	1,000원	
(3) 공장설립 입지기준확인 신청	1건	2,000원	
(4)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 등록신청	1건	10,000원	
(5)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신청(조건부등록신청)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6)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대리점)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30,000원	
(7)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주유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석유대체연료판매업(석유대체연료 판매소) 등록신청(조건부 등록신청)	1건	10,000원	
(9)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업) 신고	1건	10,000원	
(10)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의 차고지설치 확인 신청	1건	6,000원	
(11)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신규) 신고	1건	1,500원	
(12) 자가용 화물자동차 사용(변경) 신고	1건	1,500원	
(13)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1건	1,500원	
(14)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건	1,500원	
(15) 임대한 자가용 화물자동차 반환신고	1건	1,500원	
(16) 공장등록증명서 발급	1건	1,000원	<증명> 3.(8)에서 이기
(17) 공장등록대장등본 발급	1건	1,000원	
6. 건설 관계			
(1) 공작물 등 설치목적의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허가	1건	허가사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2) 비관리청의 소하천 공사시행허가	1건	허가사공사비의 1/1,000	용지비 및 보상금 제외
(3) 토석, 사력 등 공유수면 및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	1건	점용료의 1/1,000	
(4) 그 밖에 공유수면 및 소하천 점용 허가(식물의 재식 및 농업용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외)	1건	점용료의 1/1,000	
(5)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허가	1건	공사비 또는 점용료의 1/1,000	
(6)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허가사항 변경신고	1건	500원	
(7) 재식 및 농업용 하천(공유수면 및 소하천)점용허가	1건	1,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8) 소하천 점용·사용 허가	1건	1,000원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도선장설치 허가신청	1건	1,000원	
(13) 유선 및 도선의 안전검사 신청			
(가)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5인 이하의 배	척당	500원	
(나)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6인 이상 10인 이하의 배	척당	900원	
(다)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정원 20인 이하의 배	척당	1,300원	
(라) 기관을 장치하지 아니한 21인 이상의 배 및 기관을 장치한 배	척당	2,100원	
(14) 통행료(도선료)의 징수허가 신청	1건	1,000원	
(15) 옹벽 및 공작물 등 출조허가 신청	1건	1,000원	
(16) 건축사 신상 변동사항 신고	1건	500원	
(17) 공영주택 양수·양도 및 승인신청	1건	500원	
(18) 공(시)영주택(증·개축) 승인신청	1건	500원	
(19)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000원	
(20) 체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500원	
(21) 토지사용(체비지)승낙서	1건	500원	
(22) 체비지 확인서(대부, 매수, 주소변경, 소유권변경)	1건	500원	
(23) 체비지소유자 확인서	1건	500원	
(24)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500원	
7. 보건사회 관계			
(1) 분뇨종말처리시설 액상 폐기물 정화조 설계시공(청소)업자 등록증 교부신청	1건	500원	
(2)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 및 변경허가신청	1건	1,000원	
(3) 의례식장 등 명칭변경신고	1건	500원	
(4) 의례식장 등 영업의 양수 또는 상속신고	1건	5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5) 사설묘지, 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5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500원	
(7) 시체운반업 허가사항의 변경허가	1건	500원	
(8) 개설허가(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	1건	100,000원	
(나) 일반병원	1건	100,000원	
(9) 개설허가사항 변경(부속의료기관 포함)			
(가) 종합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나) 일반병원(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40,000원	
(10)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부속의료기관 포함)	1건	40,000원	
(11) 의료기관(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안마시술소, 조산소)개설신고 사항 변경 신고(부속의료기관 포함)(개설장소 이전 신고에 한함)	1건	20,000원	
(12) 치과 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3) 치과 기공소 인정사항	1건	5,000원	
(14) 치과기공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원	
(16) 안경업소 양도·양수신고 수수료	1건	10,000원	
(17) 인·허가 등록증 등 재교부 신청	1건	1,000원	
(18) 휴·폐업 확인 신청	1건	500원	
(19) 위생처리업 신고	1건	30,000원	
(20) 세척제제조업 신고	1건	15,000원	
(21)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신고	1건	30,000원	
(22) 장난감 제조업 신고	1건	10,000원	
(23) 위생처리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4) 세척제제조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5) 그 밖의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신고	1건	15,000원	
(26) 장난감제조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7) 이·미용사 면허증 교부	1건	5,500원	
(28)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	1건	3,000원	
8. 문화관광 관계			
(1)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원	
(2)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3) 노래연습장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4) 노래연습장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5) 게임제작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6) 게임제작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7) 게임배급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8) 게임배급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9) 일반 게임제공업 허가신청	1건	20,000원	
(10) 일반 게임제공업 변경허가 신청	1건	5,000원	
(11) 청소년 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2) 청소년 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3)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4) 인터넷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5)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16)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1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1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변경신고	1건	5,000원	
(19) 영화업 신고	1건	20,000원	
(20) 영화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1)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1건	5,000원	
(22) 영화상영관 등록신청	1건	20,000원	
(23) 영화상영관 변경등록 신청	1건	10,000원	
(24)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25)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등록신청	1건	20,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26) 비디오물제작업·비디오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27) 비디오물시청제공업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원	
(28)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신고	1건	20,000원	
(29)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신고	1건	20,000원	
(30)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1건	20,000원	
(3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음반·음악영상물 배급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2) 온라인 음악서비스제공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33)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1건	4,000원	
(34)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60,000원	
(35)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원	
(36)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신청	1건	50,000원	
(37)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원	
(38)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신고	1건	30,000원	
(39) 유원시설업(종합·일반유원시설업 제외) 변경 신고	1건	15,000원	
(40)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원	
9. 상수도 관계			
(1) 급수공사 대행업자 시공서 교부수수료			
(가) 신규	1건	4,000원	
(나) 갱신	1건	2,000원	
(2) 급수공사 설계 수수료			다만, 정액제에 따를 수 없는 공사의 설계 수수료는 설계 금액 100분의1로 한다.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3) 시공자재 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구 분	기 준	요 액	비 고
(4) 준공검사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5)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가) 급수관구경 40mm 미만	1건	2,000원	
(나) 급수관구경 40mm 이상	1건	4,000원	
10. 체육시설업 관계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원	
(2) 체육시설업 변경신고	1건	10,000원	
11. 환경 관계			
(1)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허가	1건	10,000원	
(2) 소음·진동 배출시설 설치신고	1건	5,000원	
(3) <삭제>			
12. 부동산중개업 관계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신청			
(가) 법인	1건	30,000원	
(나) 개인	1건	20,000원	
(2)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1건	800원	
(3)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	1건	10,000원	
(4)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1건	800원	
(5) 부동산중개업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1건	800원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에 관한 사항

제4조(교육이수자 관리) ① 시장은 교육 실시 후 교육이수자에게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보관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국가 또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제8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시(운영주체)가 주관하는”을 “시 및 수탁자가
주최·주관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장애인 복지
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천시에서 주최하는”을 “시에서 주최·주관하는”으로 한다.

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우대인증을 소지한 사람(다만, 시에서 주최·주관하는 공연 등에만 해당된다)

3. 제15조에 따라 문화가족회원으로 등록된 사람은 별표 2에 따라 감면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시 또는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사용일 10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 ② 사용일 1일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90퍼센트를 반환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사용자는 대표용 입장권을 발매하기 전에 시장 또는 수탁자와 협의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하여야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사천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미술관 자체”를 “시 또는 미술관의 특별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에”를 “전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중 “7일”을 “1일”로, “사용료의 70퍼센트”를 “사용료의 90퍼센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79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사천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전시를 목적으로 임시로 설치하는 공공조형물의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다)”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건립, 이전 및 철거”를 “건립 및 이의신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조형물”을 “공공조형물”로 한다.

제10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80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위생편리와 복리증진”을 “위생상의 편의와 안전 및 복지증진”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 설치된 화장실 중 법 제2조제1호의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다중이용 화장실을 말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중화장실 등의”를 “공중화장실등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시장이”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시”로, “전부의”를 “전부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및 범죄예방)”을 “(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본문 중 “시장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을 “시장은 공중화장실을 다수인이”로, “화장실을 상시”를 “항상”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상시”를 “항상”으로 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 예방) ① 시장은 범죄예방을 위하여 공중 화장실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단체·개인 등과 협의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③ 공중화장실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불법촬영의 사전 예방을 위한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20조(민간화장실의 불법촬영 점검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점검을 신청할 경우에는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점검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시장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등이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81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를 위하여 설치하는”을 “사천시”로, “운영에”를 “운영을 위하여”로, “규정함”을 “규정함으로써 레저관광활성화와 어촌소득증대에 이바지함”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만7세”를 “만 7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만7세 이상”을 “만 7세 이상 만”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만19세”를 “만 19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해양펜션”을 “해상펜션”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4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상펜션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제2항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이용의 금지)”를 “(시설 이용의 금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시장은 다음”으로, “사람은”을 “사람에게는 시설의”로 하며, 같은 조 제1호 중 “소지한”을 “지닌”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문란하게 하는”을 “어지럽히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7호 중 “관리인”을 “관리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명령”을 “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시설입장”을 “시설 입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해양펜션”을 “해상펜션”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6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보호자 한명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9.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11조제1항제3호 본문 중 “해양수산관련”을 “해양수산 관련”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관리자”를 “관리·운영을 위하여 수탁자”로, “이행여부”를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탁관리자”를 “수탁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을 받은 날부터 수탁기간의 종료시점까지 낚시공원의 관리자가 된다. 이 경우 수탁자는 낚시공원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낚시공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의 제목 “(수탁관리자의 모집 및 선정)”을 “(수탁자의 모집 및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수탁관리자”를 “수탁자”로, “시보”를 “일간신문”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자”로, “수탁 신청서 등 소정의 서류를 첨부한 수탁운영관리 신청서를”을 “수탁신청서에 정해진 서류를 첨부하여”로, “같다”를 “이와 같다”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탁관리자의 의무)”를 “(수탁자의 의무)”로 한다.

제18조제1항 본문 중 “양도 하거”를 “양도하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아니한다”를 “아니하다”로 한다.

별표 1의 제목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명칭 및 위치(범위)”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명칭 및 위치(범위)(제3조 관련)”으로 한다.

별표 2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입장료”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입장료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2항 관련)”으로 한다.

별표 3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이용료”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이용료 (제8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4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해상펜션 이용료(제8조제2항 관련)”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시설(해양펜션)이용료 반환 기준”을 “시설(해양펜션) 이용료 반환 기준(제9조 관련)”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를 “사천시 바다낚시공원 수탁신청서”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바다낚시공원 위·수탁협약서”를 “사천시 바다 낚시공원 위·수탁협약서”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82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2조(대책본부의 구성)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

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본부장: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2. 차장: 부시장

3.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4. 대변인: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

5. 통제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재난업무를 담당하거나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주관하는 국·소장. 다만, 해당 국·소장이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6. 담당관: 재난의 유형에 따라 해당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③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로 하는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야 한다. 이 경우 재난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부장: 대책본부 업무 총괄
2. 차장: 본부장 보좌
3.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본부장 및 차장 보좌
4. 대변인: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
5. 통제관: 재난 수습 업무 전반 통제
6.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
7. 실무반: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

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사무의 전결사항) 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천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의 편성기준 등) 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연재난: 별표 4

2. 사회재난: 별표 6

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에 대한 판단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①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본부장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② 본부장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대책본부 운영 여부
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9조에 따른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범위
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 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 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
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
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장 중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3.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실무반의 부서의 장
4.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본부장등이 지명하는 사람
5. 그 밖에 본부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① 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해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 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3장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구성 및 운영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 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천시재난 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

2.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국·소장

3.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

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

나.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대책본부회의에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된다.

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3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및 운영) 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4장 재난상황의 관리

제14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5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정한다.

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결과를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상태 등에 관한 현황

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

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

4. 지역주민 대피 및 대책본부의 수습 상황

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 요청)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수습을 위해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상남도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도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재난현장 조치)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9조(재난 예보·경보의 통보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지사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
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
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
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20조(재난수습 홍보) ①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
3. 도대책본부
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
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
6.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

② 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실무반의 임무(제3조제1항제7호 관련)

1. 자연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	1) 재난정보수집· 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	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각종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영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2) 상황보고서 작성팀	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 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가) 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및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등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차)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카)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타)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파)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 업무인수 및 반별 재 분장 하) 재난현장 민원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거) 재난대응, 피해복구 등 총괄 예산 확보 및 관리

구 분		업무와 역할
	4)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재난상황관리·보고서 작성·분석 평가팀 업무 협조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
나. 협업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관리(수용·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사) 사망자 장례지원 등 아) 그 밖에 긴급생활안정 및 구호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
	2)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가)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관리 나) 육상 및 해상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운영의 지도·확인 라) 폐기물처리 관련 예산확보, 인허가 등 업무 지원 마)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3) 긴급통신지원반	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각 통신사 지역별 비상연락 체계 구축 마)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4)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가) 공공·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응급복구 관련 예산확보 및 지원 라) 각 부서 응급복구 현황 파악
	5) 에너지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긴급복구를 위한 인력·장비·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각 부서 복구현황 파악
	6) 재난수습홍보반	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라디오·케이블TV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라) 언론발표 준비·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마)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바)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사)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구 분	업무와 역할
	아)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자) 현장, 중앙대책본부, 수습본부, 대책본부의 재난수습 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 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도록 지원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8) 교통대책반	가) 육상, 해상 및 항공 교통통제 상황관리 및 교통수단 지원 나) 육상, 해상 및 항공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다) 그 밖에 교통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피해자, 유가족지원 포함)
9)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가)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운영 사) 이재민, 유가족 심리지원 등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가)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 및 지도·확인 나) 자원봉사자 투입 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다)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라) 피해가구 안전점검 및 무상수리 등 추진
11) 사회질서 유지반	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12) 수색, 구조·구급반	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상황관리총괄반에서 통합운영)	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2. 사회재난의 경우

구 분		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	1) 상황관리 총괄팀	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본부장 등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마)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각종회의 준비)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사) 본부장 등 각종 지시사항 처리 아) 상황근무자 배치 근무명령 등 자)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차)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문자서비스 송출) 요청 카) 상황근무자 식사·야식 등 후생·복지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 시스템운영 하) 통합지원본부 철수 시 업무인수 및 재분장
	2) 수습상황 파악팀	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3) 행정지원팀	가) 주요 인사 방문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동향업무, 미담수범사례 파악 등
나. 협업 기능반	1) 긴급생활안정지원반	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2) 재난현장환경정비반	
	3) 긴급통신지원반	
	4) 시설피해응급복구반	
	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	
	6) 재난수습홍보반	
	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8) 교통대책반	
	9) 의료·방역서비스지원반	
	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11) 사회질서 유지반	
	12) 수색, 구조·구급반	
다.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	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업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	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별표 2] <개정 2021. 9. 23.>

재난 수습 주관부서(제3조제2항 관련)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교육부	1.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평생학습센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우주전파 재난 3. 정보통신 사고 4.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 5.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정보통신과 재난안전과
외교부	6.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	재난안전과
국방부	7.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	행정과
행정안전부	8. 공공청사 9. 공동구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10. 내륙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11. 풍수해(조수는 제외한다)·지진·화산·낙뢰·가뭄·한파·폭염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회계과 도로과 재난안전과 재난안전과
문화체육관광부	12. 경기장 및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	문화체육과
농림축산식품부	13. 가축 질병 14. 저수지 사고	농축산과 건설과
산업통상자원부	15.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16. 원유수급 사고 17.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으로 한정한다) 18. 전력 사고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
보건복지부	19. 보건의료 사고	치매관리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20. 감염병 재난	보건위생과
환경부	21. 수질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22. 식용수 사고 23.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24.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25. 황사 26. 미세먼지	환경보호과 상하수도사업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
고용노동부	27.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	우주항공과
국토교통부	28. 도로터널 사고 29. 육상화물운송 사고 30. 항공기 사고 31.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도로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민원교통과

재난관리주관기관	재난 및 사고의 유형	주관부서
	32.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로서 다른 재난관리 주관기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난 및 사고	건축과
해양수산부	33. 조류 대발생(적조에 한정한다) 34. 조수(潮水) 35. 해양 분야 환경오염 사고 36. 해양 선박 사고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해양수산과
금융위원회	37.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	지역경제과
원자력안전위원회	38. 인접지역 방사능 누출 사고	환경보호과
소방청	39. 화재·위험물 사고 40.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	재난안전과 시설관련부서
문화재청	41. 문화재 시설 사고	문화체육과
산림청	42. 산불 43. 산사태	녹지공원과 녹지공원과
해양경찰청	44. 해양에서 발생한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해양수산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 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사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전결사항(제5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사무내용	업무내용	담 당 관	통 제 관	총괄 조정 관	차장	본부 장
1	복무관리	비상단계 근무명령	○				
		근무자 출장명령·복명	○				
		관계 기관 파견 요구		○			
2	상황관리	재난상황보고 및 전파	○				
		초기 상황판단회의 소집	○				
		지역대책본부 가동 후 상황판단회의		○			
		상황판단회의 결과보고			○		
		재난 예보·경보 실시		○			
		그 밖에 상황관리에 필요한 사항	○				
3	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수시보고			○		
		시 대책본부 운영상황 최종보고					○
4	피해조사 및 복구	중앙합동피해조사단 편성 및 운영		○			
		피해조사결과 보고				○	
		재난복구계획 수립					○
5	시 대책본부 회의	회의 소집	○				
		회의결과 통보			○		
6	특별재난 지역 선포 등	재난사태 선포 여부 판단				○	
		재난사태 선포 건의					○
		특별재난지역선포 여부 검토 보고			○		
		특별재난지역선포 건의					○

[별표 4] <신설 2021. 9. 23.>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제7조제1항제1호 관련)

가. 비상 1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무반	인 원	총 5+ α + β 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상황관리총괄반 (4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1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1명)	재난안전과 1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1명)	재난안전과 1명
		행정지원팀(1명)	행정과 1명
	협업기능반 (α 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 사업소, 산업입지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민원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시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나. 비상 2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무반	인 원	총 7+ α + β 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상황관리총괄반 (6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1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재난안전과 2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	재난안전과 2명
		행정지원팀(1명)	행정과 1명
	협업기능반 (α 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기술지원과, 상하 수도사업소, 산업입지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민원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자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시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다. 비상 3단계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시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무반	인 원	총 $8 + \alpha + \beta$ 명	
	반 장	재난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상황관리총괄반 (7명)	재난정보 수집·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2명)	재난안전상황실 1명, 재난안전과 1명
		상황보고서 작성팀(2명)	재난안전과 2명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2명)	재난안전과 2명
		행정지원팀(1명)	행정과 1명
	협업기능반 (α 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입지과)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민원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β)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사경남지역본부진주지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비고(근무방법)

1. 상황보고서 작성팀: 재난 주관부서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남은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2.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 재난안전과 직원으로 편성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협업기능반: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모두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 인원은 재난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5에 따른다.

[별표 5] <신설 2021. 9. 23.>

자연(사회)재난에 따른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자연 재 난	가. 풍수해 (태풍·호우· 대설)	비상1단계	1) 「기상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태풍예비특보가 발표된 경우
		비상2단계	1)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가 발표된 경우 2) 기상특보 중 대설주의보, 태풍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3)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예측될 경우
		비상3단계	1) 기상특보 중 대설경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2) 호우·대설·태풍 등으로 인하여 막심한 재난예상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나. 지진·지진해일 및 화산	비상1단계	1)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연지진·지진해일 및 화산에 대하여 주의보 또는 경보(이하 “특보”라 한다) 중 규모 4.0 이상(해역은 4.5 이상)의 지진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 또는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비상2단계	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이 통보가 있는 경우 2)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주의보가 발표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3) 지진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된 경우 4) 지진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비상3단계	1) 규모 5.0 이상(해역은 5.5 이상)의 지진발생이 통보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2) 특보 중 지진해일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또는 예상된 경우 3) 특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재난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구분		비상단계 기준		
1.	다. 가뭄	비상1단계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중 어느 하나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비상2단계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합동으로 발표하는 가뭄 예·경보를 통해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모두에 대한 가뭄의 심각단계가 3개 이상의 시·도에 발표된 경우 가뭄으로 인해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비상3단계	가뭄의 심각단계가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폭염	비상1단계	1) 기상청장이 정하는 육상국지예보구역(이하 “육상국지예보구역”이라 한다)의 4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10% 이상 4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2단계	1)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 60% 미만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3단계	1)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서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마. 한파	비상1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4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2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6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비상3단계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가 육상국지예보구역의 80% 이상에 발표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사회 재난			

[별표 6] <개정 2021. 9. 23.>

사회재난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 편성기준 (제7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본 부 장	시 장		
차 장	부 시 장		
총괄조정관	재난안전을 총괄하는 국장		
통 제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 국장 등		
담 당 관	재난수습 주관부서의 부서장		
실무반	인 원	총 10+ α + β + γ 명	
	반 장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업무팀장	
	재난상황총괄반 (9명)	상황관리총괄팀(3명)	재난안전상황실 상황근무자(1) 재난수습 주관부서(2)
		수습상황파악팀(4명)	사회재난 총괄부서 2명 재난수습 주관부서 2명
		행정지원팀(2명)	행정과 1명 기획예산담당관 1명
	협업기능반 (α 명)	긴급생활안정 지원반	주민생활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재난현장환경 정비반	해당부서 (해양수산과, 환경사업소 등)
		긴급통신 지원반	정보통신과
		시설피해응급 복구반	해당부서 (관광진흥과, 문화체육과, 건축과, 건설과, 도로과, 녹지공원과, 산업입지과, 기술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 등)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	지역경제과
		재난수습 홍보반	공보감사담당관
		재난관리자원 지원반	재난안전과
		교통 대책반	민원교통과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	보건소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	주민생활지원과
사회질서 유지반		사천경찰서	
수색, 구조·구급반	사천소방서		
재난대응협업반(β) (재난상황총괄반에서 협업)	한국전력공사사천지사, KT사천지점, 한국농어촌공사사천지사, 한국도로공 사경남지역본부진주지사, 창원기상대, 군부대 등		
현장 지원반(γ) (협업기능반에서 협업)	재난수습 주관 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 재난대응협업반, 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유형 및 재난 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4. 팀원 및 반원은 6, 7급으로 편성하되, 재난 상황 발생시 본부장이 적절하게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83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중 “법 제28조제4항”을 “법 제28조제5항”으로, “열람기간동안”을 “열람 기간 동안”으로, “시홈페이지”를 “시 홈페이지”로 한다.

제18조의2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9호다목 본문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1종사업장 부터”를 “1종사업장부터”로 하며, 같은 호 바목 중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를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로 한다.

제26조제2호 중 “숙박시설”을 “숙박시설[”로, “30m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30m(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7조제3호가목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일반 숙박시설”을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에 건축하는 일반 숙박시설”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27조제4호 중 “위락시설(공원·녹지”를 “위락시설[공원·녹지”로,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8조제3호가목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28조제4호 중 “위락시설(공원·녹지”를 “위락시설[공원·녹지”로,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29조제3호가목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29조제4호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 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호가목 중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1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10미터(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한다.

제30조제4호 중 “위락시설(공원·녹지”를 “위락시설[공원·녹지”로, “(주거지역 경계에 도로가 있는 경우 그 도로의 너비는 거리산정에 산입한다.) 거리 밖에 있는 대지”를 “(건축물의 각 부분을 기준으로 한다) 밖”으로, “제외한다)”를 “제외한다]”로 한다.

제35조제8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1종사업장 부터”를 “1종사업장부터”로 한다.

제38조제1항제9호다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를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1종사업장 부터”를 “1종사업장부터”로 한다.

제44조제2항제1호가목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한다.

제6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영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84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벽면 이용 간판

제12조에 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④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을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이 직접 출석하지 않고 이메일 등 정보통신망, 화상회의,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대상·방법 또는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는 광고물등의 표시·설치와 관련한 당사자의 요청이 있거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전문가·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을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의2제1항 중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제3항”을 “도 조례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자란 중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별지 제19호서식의 신청인란 중 생년월일란에 “(남/여)”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6] <개정 2021. 9. 23.>

과태료 부과기준(제25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p>1.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p> <p>가. 입간판</p> <p>1) 도로(보도를 포함한다.)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p>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p>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p> <p>2) 그 밖의 지역·장소에 설치한 경우</p> <p>가) 연면적 1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0.5제곱미터 이하 - 0.6제곱미터 이상 0.8제곱미터 이하 - 0.9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p>나) 연면적 1제곱미터 이상 2제곱미터 미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제곱미터 이상 1.3제곱미터 이하 	<p>법 제20조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p>	<p>13만원</p> <p>22만원</p> <p>32만원</p> <p>42만원</p> <p>50만원</p> <p>64만원</p> <p>75만원</p> <p>100만원</p> <p>129만원</p> <p>13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 액 이하</p> <p>8만원</p> <p>12만원</p> <p>14만원</p> <p>25만원</p>

- 1.4제곱미터 이상 1.6제곱미터 이하	33만원
- 1.7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미만	49만원
다) 연면적 2제곱미터 이상 3제곱미터 미만	
- 2.0제곱미터 이상 2.3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2.4제곱미터 이상 2.6제곱미터 이하	67만원
- 2.7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79만원
라) 연면적 3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연면적 3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0.5제곱미터당 8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나. 현수막	
1)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	
가) 면적 3제곱미터 미만	
- 1.0제곱미터 이하	8만원
- 1.1제곱미터 이상 2.0제곱미터 이하	12만원
- 2.1제곱미터 이상 3.0제곱미터 미만	14만원
나) 면적 3제곱미터 이상 5제곱미터 미만	
- 3.0제곱미터 이상 3.7제곱미터 이하	22만원
- 3.8제곱미터 이상 4.4제곱미터 이하	25만원
- 4.5제곱미터 이상 5.0제곱미터 미만	32만원
다) 면적 5제곱미터 이상 10제곱미터 미만	
- 5.0제곱미터 이상 6.0제곱미터 이하	42만원
- 6.1제곱미터 이상 8.0제곱미터 이하	58만원
- 8.1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	75만원
라) 면적 10제곱미터 이상	80만원+연면적 10제곱미터 초과하는 면적의 1제곱미터당 1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2) 1)을 설치하여 차량통행이나 일반인의 보행을 현저히 방해한 경우	해당 과태료의 2배까지 증가
다. 벽보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17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25천원

- 21장 이상		장당 42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라. 전단		
1) 일반 광고내용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8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17천원
- 21장 이상		장당 25천원
2)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장 이상 10장 이하		장당 25천원
- 11장 이상 20장 이하		장당 33천원
- 21장 이상		장당 50천원
2.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의3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1만원에 1일째부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씩 더한 금액 10만원에 11일째부터
다.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3.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가. 30일 이상 90일 미만		67만원

나. 90일 이상 180일 미만		117만원
다. 180일 이상 1년 미만		217만원
라. 1년 이상		400만원
4.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5호	
가. 연 1회 위반한 경우		80만원
나. 연 2회 위반한 경우		200만원
다. 연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500만원
5.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0조제2항	
가. 1회 위반한 경우		25만원
나. 2회 연속 위반한 경우		45만원
다. 3회 연속 위반한 경우		100만원

비고 :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

1. 과태료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 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퍼센트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에 대한 과태료 금액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다.
 -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1.5배를 적용한다.
 -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과태료의 2배를 적용한다.
 -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과태료 산정금액에 전기 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최초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과태료 부과금액의 30퍼센트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영 제4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옥외광고업 종사자 보수교육에 대하여는 본 교육 및 보충교육 불참 시 각 1회 불참으로 본다.
7. 과태료의 총 금액에서 1천 원 미만은 버린다.
8.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은 장당으로 계산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85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시장”을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성별이 위촉직 위원”을 “성(性)이 위촉위원”으로, “아니하도록 하여야”를 “않도록 해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시”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풍부한자”를 “풍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4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호 중 “지하수관련”을 “지하수 관련”으로, “임·직원”을 “임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로,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채움”을 “보궐”로, “전임자”를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두되 업무담당”을 “두며, 간사는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제8조제1항 중 “법 제30조의2 규정”을 “법 제30조의2”로 한다.

제9조 중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을 “법 제30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지하수”를 “시장이 지하수”로, “보전형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를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사천시”를 “시”로 한다.

제13조의2제1항 중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5조”를 “「지하수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적치하거”를 “쌓아두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2항 중 “명시하여”를 “분명하게 밝혀”로 한다.

제1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3(이행보증금의 감경) 시장은 규칙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이행보증금을 감경할 수 있다.

1.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미만인 경우: 100분의 50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2. 이행보증금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30

제16조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시장은 제1항에 따른”으로,
“시장은 30일”을 “30일”로, “통지”를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86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은”을 “시장은 법 제13조제4항 및”으로, “제26조제5항 및 영 제54조제6항”을 “제43조제5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7호 중 “영 제49조제2항”을 “영 제4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영 제54조제2항 및 제4항”을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10호 및 제9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중전의 제9호) 중 “영 제59조”를 “영 제53조”로 하며, 같은 항 제9호(중전의 제10호) 중 “영 제64조제1항제1호”를 “영 제52조제1호”로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17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87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사천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5조제1항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 위원”을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8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0조제3항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일필지 조사”를 “토지현황조사”로 한다.

제11조제2항 본문 중 “토지소유자 협의회”를 “토지소유자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 본문 중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를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한차례에 한정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임 위원”을 “전임자 임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담당주사”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19조제6항을 삭제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단서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한다.

제23조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중 “추진단”을 “사천시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중 “사업”을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사업지구”를 “지적재조사지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밖의 사업”을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한다.

제27조 및 제30조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조례 제1788호

사천시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여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
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다.

3. “재사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재사용을 말한다.

4. “재생이용”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재생이용을 말한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이하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이라 한다)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

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
3. 시민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 방안
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
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시 관내 아이스팩 배출 현황과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을 위한 수거·세척·운반·관리비
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등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아이스팩 배출 저감 노력을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규칙 제782호

사천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의결한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
한 규정」 제30조 및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5조에 따라
정원관리기관별로 두는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2조 중 “시”를 “사천시”로 한다.

제3조 중 “시장”을 “사천시장”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 <개정 2021. 9. 23.>

사천시 직렬별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직렬별		기관별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총합계	본청							
총합계		972	516(3)	17	152	51(1)	26	119	91	
정무직 합계		1	1							
단체장(시장)		1	1							
일반직 합계		941	514(3)	17	123	51(1)	26	119	91	
3급	소계	1	1							
	부이사관	1	1							
4급	소계	7	4	1	2					
	행정	1	1							
	기술	1			1					
	행정+기술	4	3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5급	소계	51	26	2	6	3	1	7	6	
	행정	7	5	1		1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3	3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시설	11	10	1						
	행정+방송통신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행정+공업+시설	2	2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직렬별										
5급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행정+농업+녹지+방송 통신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3			3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6급	소계	246	154	3	26	13	6	30	14	
	행정	49	44	2		3				
	세무	2	2							
	사회복지	1	1							
	공업	1				1				
	환경	1	1							
	농업	3			3					
	녹지	1	1							
	해양수산	3	3							
	시설	15	14			1				
	보건진료	2			2					
	행정+세무	13	9					1	3	
	행정+사회복지	19	11			1	1	3	3	
	행정+농업	6	2		1		2	1		
	행정+공업	2	2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녹지	1	1							
	행정+보건	3			3					
	행정+시설	26	24	1			1			
	행정+전산	1	1							
	행정+환경	1	1							
	해양수산+환경	1	1							
	보건+간호	5			5					
	공업+시설+환경	1				1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공업+환경	4	2			2				
	행정+공업+시설	9	9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농업+수의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4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녹지	7	3					4		
	행정+세무+농업	3						3		
	행정+세무+사회복지	3						2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7	3					4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전산+시설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환경+위생	2				2				
	행정+운전+방호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3			3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전산+방송통신	1							1	
	행정+세무+농업+보건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3						1	2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해양수산+보건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수의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2			2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2			2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6급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해양수산	1							1	
7급	소계	259	151	3	40	13	5	27	20	
	행정	55	38	2		2	1	9	3	
	세무	6	5						1	
	사회복지	13	2					8	3	
	공업	1			1					
	농업	1			1					
	녹지	3	3							
	해양수산	3	3							
	보건	4			4					
	의료기술	2			2					
	간호	4			4					
	환경	2	2							
	시설	16	13			2	1			
	수의	2			2					
	보건진료	7			7					
	행정+세무	7	6					1		
	행정+사회복지	11	7			1			3	
	행정+전산	4	3			1				
	행정+농업	5	1		2		1	1		
	행정+공업	2	2							
	행정+녹지	2	2							
	행정+보건	2	1		1					
	행정+시설	28	27						1	
	행정+해양수산	1	1							
	행정+방재안전	1	1							
	행정+환경	1				1				
	보건+간호	2			2					
	보건+의료기술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7급	공업+시설	1				1				
	농업+녹지	1			1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농업	2	2							
	행정+공업+환경	9	7			2				
	행정+공업+시설	7	6			1				
	행정+사회복지+시설	2	1					1		
	농업+수의+환경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5	4	1						
	행정+농업+녹지	3	2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8	1				2		5	
	행정+농업+시설	6	3					2	1	
	행정+해양수산+시설	2	2							
	행정+세무+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6			6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2	2							
	행정+사회복지+시설+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간호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2						2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1			1					
	행정+공업+시설+해양 수산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1				1				
	운전	4	2		1	1				
8급	소계	229	108	4	41	11	10	26	29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 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	52	22	1		1	5	11	12	
	세무	2	2							
	사회복지	11	4				2	2	3	
	공업	2	1			1				
	농업	1			1					
	녹지	1	1							
	해양수산	3	3							
	보건	1			1					
	의료기술	2			2					
	간호	18			13		1	2	2	
	보건진료	4			4					
	시설	14	13			1				
	행정+세무	9	5					1	3	
	행정+사회복지	13	10			1	1		1	
	행정+사서	1				1				
	행정+전산	4	4							
	행정+속기	1		1						
	행정+농업	4	1		1				2	
	행정+보건	1			1					
	행정+환경	2	1			1				
	보건+간호	8			8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시설	20	16			2		1	1	
	행정+해양수산	3	3							
	행정+방재안전	2	2							
	행정+보건+간호	1			1					
	행정+공업+환경	2	2							
	행정+전산+방송통신	4	2	2						
	행정+농업+녹지	7	2				1	3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8급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1					1	1	
	행정+농업+시설	2	2							
	행정+공업+시설	3	3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시설	1	1							
	보건+공업+환경	1				1				
	해양수산+환경+시설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5			5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농업+녹지+ 해양수산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간호	2			2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행정+공업+시설+방송 통신	1	1							
	운전	5	2		1	2				
	전기운영	2	2							
9급	소계	148	70(3)	4	8	11(1)	4	29	22	
	행정	29	7(3)			2(1)	1	11	8	
	사회복지	6	3				1		2	
	공업	1	1							
	농업	1			1					
	시설	10	7			1		2		
	세무	3	3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보건	1			1					
	환경	1	1							
	행정+세무	1	1							
	행정+방재안전	3	3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20	10					8	2	
	행정+농업	4			2		1		1	
	행정+녹지	3	3							
	행정+보건	2			2					
	행정+시설	11	10					1		
	행정+숙기	1		1						
	행정+해양수산	2	2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2	2							
	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3							3	
	행정+전산+방송통신	2	2							
	행정+공업+환경	3	2			1				
	행정+공업+시설	4	4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1							1	
	행정+사회복지+공업+ 농업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1							1	

직렬별		기관별	총합계	본청	의회 사무국	직속 기관	사업소	읍	면	동	비고
9급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 환경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2						2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속기	1		1						
		운전	5	2	2		1				
		사무운영	5	3			1		1		
		전기운영	1				1				
		방호	3	1			1		1		
지도직 합계			29			29					
지도 사		농촌지도사	29			29					
연구직 합계			1	1							
연구 사		기록연구사	1	1							
별정직 합계			-	-							
별정6 급상당		비서	-	-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훈령 제411호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지방공무원 부서별 정원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 표】<개정 2021. 9. 23.>

사천시 지방공무원 정원표(제2조 관련)

□ 총괄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합 계	972	941	1	7	51	246	259	229	148		1	29	1
기획예산담당관	17	17			1	7	7	1	1				
공보감사담당관	15	15			1	7	5	2					
혁신법무담당관	13	13			1	5	4	3					
행 정 과	28	26	1	1	1	10	7	3	3		1		1
주민생활지원과	23	23			1	7	4	6	5				
노인장애인과	19	19			1	6	3	4	5				
여 성 가 족 과	21	21			1	5	6	4	5				
세 무 과	31	31			1	8	10	7	5				
회 계 과	22	22			1	6	6	9					
문 화 체 육 과	19	19		1	1	5	6	3	3				
관 광 진 흥 과	17	17			1	6	5	2	3				
환 경 보 호 과	16	16			1	5	5	3	2				
해 양 수 산 과	24	24			1	7	7	7	2				
민 원 교 통 과	24	24			1	6	8	7	2				
정 보 통 신 과	14	14			1	5	3	3	2				
재 난 안 전 과	23	23		1	1	7	5	5	4				
도 시 과	16	16			1	5	5	4	1				
건 축 과	23	23			1	6	6	6	4				
건 설 과	17	17			1	5	5	4	2				
도 로 과	21	21			1	5	7	4	4				
도 시 재 생 과	17	17			1	5	6	5					
우 주 항 공 과	19	19		1	1	6	6	3	2				
산 업 입 지 과	16	16			1	4	6	3	2				
지 역 경 제 과	17	17			1	4	6	3	3				

직급별 부서별	합계	일 반 직								별정직	정무직	지도직	연구직
		소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녹지공원과	22	22			1	6	7	3	5				
토지관리과	20	20			1	5	5	4	5				
의회사무국	17	17		1	2	3	3	4	4				
보건소	98	98		1	3	19	31	39	5				
농업기술센터	54	25		1	3	7	9	2	3			29	
평생학습센터	13	13			1	4	4	2	2				
환경사업소	17	17			1	4	4	4	4				
상하수도사업소	21	21			1	5	5	5	5				
신수출장소	2	2				1	1						
사천읍	26	26			1	6	5	10	4				
정동면	17	17			1	4	4	3	5				
사남면	20	20			1	5	6	4	4				
용현면	19	19			1	5	3	6	4				
축동면	15	15			1	4	3	4	3				
곤양면	16	16			1	4	3	4	4				
곤명면	16	16			1	4	4	3	4				
서포면	16	16			1	4	4	2	5				
동서동	17	17			1	3	2	6	5				
선구동	14	14			1	2	3	4	4				
동서금동	13	13			1	2	3	3	4				
별용동	19	19			1	3	6	6	3				
향촌동	14	14			1	2	3	6	2				
남양동	14	14			1	2	3	4	4				

□ 기획예산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7	7	1	1			
일반직	소 계	17		1	7	7	1	1			
	행 정	11		1	5	4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	2			2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전산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 공보감사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5		1	7	5	2				
일반직	소 계	15		1	7	5	2				
	행 정	6		1	3	1	1				
	시 설	2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3			2	1					

□ 혁신법무담당관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5	4	3			
일반직	소 계	13		1	5	4	3			
	행 정	7			4	2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공업+시설	2		1		1				

□ 행정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연구직	정무직
총합계		28	1	1	1	10	7	3	3	1	1
일반직	소 계	26	1	1	1	10	7	3	3		
	부이사관	1	1								
	행 정	19		1	1	9	6	1	1		
	행정+전산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운 전	1						1			
	사무운영	1							1		
연구직	소 계	1								1	
	기록연구사	1								1	
정무직	소 계	1									1
	정 무 직	1									1

□ 주민생활지원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7	4	6	5	
일반직	소 계	23		1	7	4	6	5		
	행 정	3			1	1	1			
	사회복지	5			1	1	1	2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	14		1	5	2	4	2		

□ 노인장애인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6	3	4	5	
일반직	소 계	19		1	6	3	4	5		
	행 정	3			1	2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11		1	3		2	5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시설	1			1					

□ 여성가족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6	4	5	
일반직	소 계	21		1	5	6	4	5		
	행 정	6			2	3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4		1	3	3	4	3		

□ 세무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31		1	8	10	7	5	
일반직	소 계	31		1	8	10	7	5		
	행 정	4		1	2		1			
	세 무	11			1	5	2	3		
	행정+세무	15			5	5	4	1		
	사무운영	1						1		

□ 회계과

직렬별 \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6	6	9		
일반직	소 계	22		1	6	6	9			
	행 정	9		1	1	1	6			
	행정+세무	3			1	1	1			
	행정+공업	3			2	1				
	행정+시설+방송통신	2			2					
	행정+세무+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2				2				
	운 전	2				1	1			

□ 문화체육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9	1	1	5	6	3	3			
일반직	소 계	19	1	1	5	6	3	3			
	행정+기술	1	1								
	행 정	3				2		1			
	행정+시설	6		1	1	2	1	1			
	행정+보건	1				1					
	행정+전산	1					1				
	행정+공업+시설	6			3	1	1	1			
	행정+운전+방호	1			1						

□ 관광진흥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6	5	2	3			
일반직	소 계	17		1	6	5	2	3			
	행 정	5			3	2					
	시 설	2				1		1			
	행정+시설	8		1	2	2	2	1			
	행정+공업+시설	2			1			1			

□ 환경보호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5	5	3	2			
일반직	소 계	16		1	5	5	3	2			
	행정	1				1					
	환경	4			1	2		1			
	공업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5			1	2	1	1			
	행정+공업+보건+환경	2		1	1						

□ 해양수산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4		1	7	7	7	2			
일반직	소 계	24		1	7	7	7	2			
	해양수산	9			3	3	3				
	행정+해양수산	7		1		1	3	2			
	행정+시설	1			1						
	해양수산+환경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3			2	1					
	해양수산+환경+시설	3					2	1			

□ 민원교통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4		1	6	8	7	2			
일반직	소 계	24		1	6	8	7	2			
	행정	15			4	5	5	1			
	행정+시설	2				1	1				
	행정+공업+시설	7		1	2	2	1	1			

□ 정보통신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4		1	5	3	3	2			
일반직	소 계	14		1	5	3	3	2			
	행정	1			1						
	행정+전산	3			1		2				
	행정+방송통신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9			3	3	1	2			

□ 재난안전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1	7	5	5	4		
일반직	소 계	23	1	1	7	5	5	4		
	행 정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6			3	2	1			
	행정+전산	1				1				
	행정+방재안전	6				1	2	3		
	행정+공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1	1			
	행정+공업+시설+방송통신	2			1		1			

□ 도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5	5	4	1		
일반직	소 계	16		1	5	5	4	1		
	행 정	5			2	1	1	1		
	시 설	4			2	1	1			
	행정+전산	1				1				
	행정+시설	4		1	1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 건축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3		1	6	6	6	4		
일 반 직	소 계	23		1	6	6	6	4		
	행 정	1					1			
	사회복지	1					1			
	시 설	10			2	3	4	1		
	행정+시설	6		1	2	2		1		
	공업+시설	1						1		
	행정+농업+시설	4			2	1		1		

□ 건설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5	5	4	2		
일 반 직	소 계	17		1	5	5	4	2		
	행 정	3			1	1	1			
	시 설	5			2		2	1		
	행정+시설	3		1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3			1	1	1			
	행정+해양수산+시설	1				1				
	사무운영	1						1		

□ 도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1		1	5	7	4	4			
일반직	소 계	21		1	5	7	4	4			
	행정	1				1					
	시설	7		1	2	1	2	1			
	행정+시설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전기운영	2					2				
	방 호	1							1		
운 전	3				1			2			

□ 도시재생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5	6	5				
일반직	소 계	17		1	5	6	5				
	행정	3				2	1				
	시설	6			3	2	1				
	행정+시설	7		1	2	2	2				
	행정+농업+녹지	1						1			

□ 우주항공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9	1	1	6	6	3	2			
일 반 직	소 계	19	1	1	6	6	3	2			
	행 정	3			2		1				
	시 설	1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12		1	4	3	2	2			
	행정+공업+환경	2				2					

□ 산업입지과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6	3	2			
일 반 직	소 계	16		1	4	6	3	2			
	행 정	2			1	1					
	시 설	3			1	1	1				
	행정+시설	8		1	1	3	1	2			
	행정+공업+환경	2				1	1				
	행정+공업+농업+환경	1			1						

□ 지역경제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4	6	3	3		
일반직	소 계	17		1	4	6	3	3		
	행정	3			1	1		1		
	세 무	1			1					
	공 업	1						1		
	사회복지	1					1			
	행정+시설	4		1		1	2			
	행정+농업	1				1				
	행정+공업+농업	1				1				
	행정+공업+환경	3			1	1		1		
	행정+공업+시설+해양수산	2			1	1				

□ 녹지공원과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2		1	6	7	3	5		
일반직	소 계	22		1	6	7	3	5		
	행정	1					1			
	녹 지	5			1	3	1			
	행정+녹지	6			1	2		3		
	공업+시설	1						1		
	행정+녹지+공업	1			1					
	행정+농업+녹지	6			3	2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행정+녹지+공업+시설	1						1		

□ 토지관리과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0		1	5	5	4	5		
일반직	소 계	20		1	5	5	4	5		
	시 설	8			2	2	1	3		
	행정+시설	10		1	2	3	2	2		
	행정+전산+시설	2			1		1			

□ 의회사무국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2	3	3	4	4		
일반직	소 계	17	1	2	3	3	4	4		
	행 정	6		1	2	2	1			
	행정+기술	1	1							
	행정+시설	2		1	1					
	행정+전산+방송통신	3				1	2			
	행정+속기	2					1	1		
	속 기	1						1		
	운 전	2						2		

□ 보건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98	1	3	19	31	39	5		
일 반 직	소 계	98	1	3	19	31	39	5		
	기 술	1	1							
	보 건	6				4	1	1		
	의료기술	4				2	2			
	간 호	17				4	13			
	보건진료	13			2	7	4			
	행정+보건	7			3	1	1	2		
	행정+보건+간호	2				1	1			
	행정+보건+식품위생	1			1					
	보건+의료기술	3				1	1	1		
	보건+간호	15			5	2	8			
	행정+보건+의료기술	1						1		
	행정+보건+사회복지	1			1					
	보건+의료기술+간호	14			3	6	5			
	행정+사회복지+보건+간호	3			2	1				
	행정+보건+의료기술+간호	8		3	2	1	2			
운 전	2				1	1				

□ 농업기술센터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54	1	3	7	9	2	3		29
일반직	소 계	25	1	3	7	9	2	3		
	농 업	6			3	1	1	1		
	공 업	1				1				
	수 의	2				2				
	행정+농업	6			1	2	1	2		
	농업+녹지	1				1				
	농업+농촌지도관	2		2						
	농업+농촌지도사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수의	1			1					
	농업+수의+환경	2			1	1				
	행정+농업+농촌지도관	1		1						
	행정+기술+농촌지도관	1	1							
지도직	소 계	29								29
	농촌지도사	29								29

□ 평생학습센터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4	4	2	2		
일반직	소 계	13		1	4	4	2	2		
	행 정	8		1	3	2		2		
	행정+전산	1				1				
	행정+사회복지	3			1	1	1			
	행정+사서	1					1			

□ 환경사업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4	4	4	4		
일반직	소 계	17		1	4	4	4	4		
	공 업	1			1					
	행정+환경	2				1		1		
	행정+시설	2					2			
	행정+환경+위생	1			1					
	행정+공업+환경	4			1	2		1		
	행정+보건+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2		1				1		
운 전	4					1	2	1		

□ 상하수도사업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1		1	5	5	5	5		
일반직	소 계	21		1	5	5	5	5		
	행정	1					1			
	시설	5			1	2	1	1		
	공업	1					1			
	행정+환경	1					1			
	공업+환경	1						1		
	공업+시설	1				1				
	행정+환경+위생	1			1					
	공업+시설+환경	1			1					
	행정+공업+환경	1			1					
	행정+공업+시설	1				1				
	행정+공업+보건+시설	2		1		1				
	보건+공업+환경	1					1			
	행정+환경+시설+보건	1			1					
	사무운영	1						1		
	전기운영	1						1		
방 호	1						1			

□ 신수출장소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			1	1				
일반직	소 계	2			1	1				
	행정	1				1				
	행정+농업+해양수산	1			1					

□ 사천읍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26		1	6	5	10	4		
일 반 직	소 계	26		1	6	5	10	4		
	행 정	7				1	5	1		
	사회복지	3					2	1		
	시 설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	4			2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보건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시설	2		1				1		
	간 호	1					1			

□ 정동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7		1	4	4	3	5			
일반직	소 계	17		1	4	4	3	5			
	행정	5				2	1	2			
	사회복지	2				2					
	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2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보건+시설	1		1							
	방 호	1						1			

□ 사남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20		1	5	6	4	4			
일반직	소 계	20		1	5	6	4	4			
	행정	6				1	3	2			
	사회복지	2				2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의료기술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녹지+방송통신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간 호	1					1				

□ 용현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5	3	6	4		
일 반 직	소 계	19		1	5	3	6	4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2				1	1			
	시 설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시설+방송통신	1		1						
	사무운영	1						1		
간 호	1					1				

□ 축동면

직급별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5		1	4	3	4	3		
일 반 직	소 계	15		1	4	3	4	3		
	행 정	4					2	2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농업	2			1		1			
	행정+농업+시설	3			2	1				
	행정+녹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녹지+시설	1				1					

□ 곤양면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6		1	4	3	4	4		
일 반 직	소 계	16		1	4	3	4	4		
	행 정	5				2	1	2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농업+녹지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사회복지+세무+수의	1					1			
	행정+수의+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 곤명면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4	3	4			
일반 직	소 계	16		1	4	4	3	4			
	행정	5				2	2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농업+환경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녹지	1		1							
	행정+농업+녹지 +시설	2			1			1			
	행정+세무+농업 +시설	1			1						
	행정+사회복지+환경 +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 +수의	1			1							

□ 서포면

직렬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6		1	4	4	2	5			
일 반 직	소 계	16		1	4	4	2	5			
	행정	2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공업+농업+해양수산	1			1						
	행정+농업+시설+수의	1			1						
	행정+사회복지+환경+시설	1						1			
	행정+농업+해양수산+시설	1		1							
	행정+농업+녹지+해양수산	1					1				

□ 동서동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7		1	3	2	6	5	
일반직	소 계	17		1	3	2	6	5		
	행 정	5					4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농업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해양수산	2		1				1		
	행정+사회복지+ 해양수산+보건	1			1					
간 호	1					1				

□ 선구동

직렬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4		1	2	3	4	4	
일반직	소 계	14		1	2	3	4	4		
	행 정	4					2	2		
	세 무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세무	2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방송통신	1		1						
	행정+전산+사회복지 +방송통신	2			1			1		

□ 동서금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3		1	2	3	3	4		
일반직	소 계	13		1	2	3	3	4		
	행 정	4					2	2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4			1	2		1		
	행정+사회복지+보건+환경	3		1				1	1	

□ 별용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19		1	3	6	6	3		
일반직	소 계	19		1	3	6	6	3		
	행 정	4				2	1	1		
	사회복지	2				1	1			
	행정+사회복지	4			2		1	1		
	행정+농업	1					1			
	행정+시설	1					1			
	행정+세무+사회복지	1				1				
	행정+세무+녹지	1				1				
	행정+세무+시설	1			1					
	행정+사회복지+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시설+환경	1				1				
	간 호	1						1		

□ 향촌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4		1	2	3	6	2			
일 반 직	소 계	14		1	2	3	6	2			
	행 정	2					1	1			
	사회복지	1					1				
	행정+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시설	1				1					
	행정+사회복지+전산	1			1						
	행정+사회복지+시설	1					1				
	행정+농업+녹지	1					1				
	행정+농업+시설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2			1		1				
행정+사회복지+공업+농업	2		1					1			

□ 남양동

직렬별 \ 직급별		직급별								지도관	지도사
		총합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총합계		14		1	2	3	4	4			
일 반 직	소 계	14		1	2	3	4	4			
	행 정	4				1	2	1			
	사회복지	1						1			
	행정+세무	1					1				
	행정+사회복지	3			1	2					
	행정+농업	2					1	1			
	행정+사회복지+농업+녹지	2		1					1		
	행정+세무+농업+시설	1			1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훈령 제412호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송 도 근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사천시 부서별 분장사무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분장사무의 조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장사무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사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담당관, 과·소내 분장사무는 담당관, 과·소장이, 국·소내 분장 사무는 국·소장이 조정한다.
2. 둘 이상의 담당관, 국·소가 관련되는 업무는 그 업무의 비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어려울 경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우 관련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분장사무 조정신청서를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따라 분장사무 조정신청서를 받은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분장사무 조정 관련부서 의견서에 따라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행정과장은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분장사무 조정신청 부서 및 의견제출 부서(이하 “해당부서”라 한다)의 요구를 검토하여 부서 간 협조 및 조정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천시 사무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5조(사천시 사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4조제5호에 따른 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사무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국·소장 및 행정과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④ 행정과장은 제3항에 따른 조정 결과를 해당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해당부서의 장은 그 조정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사업무를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사무조정 기준)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과의 연계성 및 비중
2. 중앙행정기관 및 경상남도의 소관부서와 연계성
3. 행정기구의 설치목적과 기능
4. 사무 또는 사업의 성격, 행정능률, 연속성 및 주민편의
5. 사무의 비중 및 업무량

제7조(미분장 문서의 지정) 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분장사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무로서 처리부서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문서과에서 처리과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처리과에서는 해당 문서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③ 처리과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미분장 문서의 사무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분장사무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문서는 제외한다.

별표 1 중 토지관리과 부동산관리팀 분장사무란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해제 포함)의 신고 업무

별표 5 중 분장사무란에 제4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46. 주택 임대차 계약(변경, 해제 포함)의 신고 업무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 천 시 공 보

제745호

사천시 공고 제2021-1208호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완료(서동1지구, 정곡1지구) 공고·공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지적재조사사업(서동1·정곡1지구)에 대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9월 23일

사 천 시 장

1. 사 업 명 : 서동1, 정곡1 지적재조사사업
2. 사업시행자 : 사천시장
3. 사업완료 필지수 및 면적
 - 서동1지구 : 14필지, 6,523.7㎡
 - 정곡1지구 : 17필지, 8,966.8㎡
4. 지적확정조서 : 붙임문서 참조
5.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 이상
6. 공람장소 :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7. 공람 비치서류 : 별도첨부
 - 가. 새로 작성한 지적공부
 - 나. 지상경계점등록부
 - 다. 측량성과 결정을 위하여 취득한 측량기록물
8. 문의처: 사천시청 토지관리과 토지재조사팀(☎055-831-2841~2843,2978)

■ 서동1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번호	확정토지				면적 증감 (㎡)	소유자		비고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동리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서동	176-49	도로	1,262	1	서동	176-49	도로	1,181.7	-80.3	사천시		
2	서동	178-6	대	2,618	2	서동	178-6	대	2,618	0.0	강*웅 외 53명	경상남도 사천시 청널샘터길 **	
3	서동	178-17	대	66	3	서동	178-17	대	84.5	18.5	백*연	경상남도 사천시 유람선길 ** (서 동)	
4	서동	178-19	대	195	4	서동	178-19	대	198.4	3.4	김*수 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쌍외들3길 ** (향 촌동)	
5	서동	178-21	답	136	5	서동	178-21	도로	136	0.0	이*복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_** (주약동)	
6	서동	178-23	대	176	6	서동	178-23	대	183.7	7.7	허*표	경상남도 사천시 주공로 ** (용강 동)	
7	서동	178-42	대	554	7	서동	178-42	대	516.4	7.4	설*태 외 1명	경상남도 사천시 상강청길 ** (용강 동)	
					8		178-142	대	45				
8	서동	178-44	대	190	9	서동	178-44	대	212.4	22.4	최*석	경상남도 사천시 용현면 용현로 **	
9	서동	178-45	답	152	10	서동	178-45	답	153.9	1.9	정*순	경상남도 통영시 사랑면 하도일주 로 ***	
10	서동	178-46	대	238	11	서동	178-46	대	229.4	-8.6	안*순	경상남도 진주시 신평공원길25번길 *_**(평거동)	
11	서동	178-47	대	218	12	서동	178-47	대	226	8.0	조*일	경상남도 사천시 서리길 ** (서동)	
12	서동	178-48	대	214	13	서동	178-48	대	214	0.0	정*환	경상남도 사천시 유람선길 * (서동)	
13	서동	178-140	도로	610	14	서동	178-140	도로	524.3	-85.7	국 (국토교통부)		

■ 정곡1 지적재조사사업 지적확정조서

번호	종전 토지					번호	확정토지					면적 증감 (㎡)	소유자		비 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1	곤명	정곡	721	대	780	1	곤명	정곡	721	대	724.2	-55.8	이*대 자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1208번 길**	
2	곤명	정곡	722	대	1,012	2	곤명	정곡	722	대	1,743.7	467.7	손*권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	
3			728	대	264										
4	곤명	정곡	723	전	436	3	곤명	정곡	723	전	407.9	-28.1	손*권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	
5	곤명	정곡	724	답	558	4	곤명	정곡	724	전	678.5	120.5	현*희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	
6	곤명	정곡	726	답	489	5	곤명	정곡	726	전	235.2	-253.8	현*희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	
7	곤명	정곡	730	대	536	6	곤명	정곡	730	대	669.3	133.3	현*희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	
8	곤명	정곡	731	전	572	7	곤명	정곡	731	전	615	43.0	김*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	
9	곤명	정곡	733	대	278	8	곤명	정곡	733	대	311.6	33.6	김*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	
10	곤명	정곡	734	대	575	9	곤명	정곡	734	대	285	-290	김*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	
11	곤명	정곡	735	전	201	10	곤명	정곡	735	전	192.1	-8.9	김*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	
12	곤명	정곡	735-1	대	351	11	곤명	정곡	735-1	대	914.1	381.1	김*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	
13			735-2	대	182										
14	곤명	정곡	737	잡종지	221	12	곤명	정곡	737	잡종지	281.6	60.6	박*식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	
15	곤명	정곡	738	대	350	13	곤명	정곡	738	대	426.9	170.8	강*아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140	
-						14			738-1	전	93.9				
16	곤명	정곡	739	임야	172	-	-	-	-	-	말소	-172.0	박*식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	
17	곤명	정곡	740	대	367	15	곤명	정곡	740	대	593.1	226.1	박*식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	
18	곤명	정곡	782	답	90	16	곤명	정곡	782	전	94.1	4.1	손*권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서삼길 ***	
19	곤명	정곡	828-8	전	43	-	-	-	-	-	말소	-43.0	국 (기획 재정부)		
20	곤명	정곡	828-9	도로	686	17	곤명	정곡	828- 9	도로	700.6	14.6	국 (국토 교통부)		

순번	종전 토지					순번	확정토지					면적 증감 (㎡)	소유자		비고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읍면	리	지번	지목	면적 (㎡)		성명	주소	
21	곤명	정곡	산58-4	임야	211		-	-	-	-	말소	-211.0	배*호(외 2명)	***	
22	곤명	정곡	산58-5	임야	417		-	-	-	-	말소	-417.0	배*호(외 2명)	***	
23	곤명	정곡	산58-6	임야	204		-	-	-	-	말소	-204.0	김*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	
24	곤명	정곡	산58-7	임야	93		-	-	-	-	말소	-93.0	김*현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문화서7길 **	